#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·발급 업무 집행 지침

(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)

'22. 00. 00. 제정

이 지침에서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, 「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」,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은 각각 "RCEP", "한-아세안 FTA", "법", "시행령", "시행규칙"이라 지칭함

#### I. 목 적

□ 이 지침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・발급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## Ⅱ. 적용 대상

□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재수출 되는 물품에 대해 RCEP 제3.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・ 발급하거나, 한-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

### Ⅲ.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·발급

## 1. 유의사항

가. RCEP 제3.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·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

#### <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·발급 요건 >

-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
-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
-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-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
- ④ 재포장 또는 하역, 재선적, 보관,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, 규정, 절차,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,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
-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,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,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
-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
- 나.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·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\*(이하 "원본 원산지증명"이라 한다)의 작성·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 원산지증명이 작성·발급될 수 있음.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 시행령 제4조제5항이 또는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
  - \* RCEP 제3.16조제1항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원산지증명
- 다.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(이하 "대상물품"이라 한다)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될 수 있음. 이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협정 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·발급 시 고려하지 않음
- 라.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 되거나, 사용·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·발급할 수 없음
- 마.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양·수도될 수 있음. 이 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증명과 함께 양·수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의 범위 이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·작성하여야 함
- 바.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 방식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
  - \* (예시) 원본 원산자증명의 물품을 A, B에게 양도하는 경우, A, B는 각각 자신이 양수받은 물품의 범위 내에서 연결 원산자증명을 하나의 세관(상의)에 발급 신청 또는 인증수출자로서 자율 발급

- 사.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2.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·작성하는 자가 RCEP 원산지국가를 입증하여야 함
- 아.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·작성한 자,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양·수도한 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, RCEP 제3.24조 및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

### 2. [기관발급]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

- 가.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(이하 "발급기관장"이라 한다)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  - 1) 원본 원산지증명. 다만,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형태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
    - <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본 원산지증명의 형태 >
    - ▶ (서면본) 다음 중 하나의 것
    - ① 아래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

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,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.

수입자 ○○○ (서명)

- ② 전자적 형태(Digital Format)로 발급받은 파일(PDF 등)을 인쇄한 것
- ③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(PDF, JPEG 등)을 인쇄한 것
- ▶ (전자본) 다음 중 하나의 것
- ① 전자적 형태(Digital Format)로 발급받은 파일(PDF 등)
-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(PDF, JPEG 등)

- 2)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\* 및 제2호\*\*의 제출서류. 다만, 보세 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반송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
  - \*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각 목의 서류
  - \*\*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
- 3)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
  - 가)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의 수리필증 사본. 다만, 보세 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
  - 나)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서류 사본
- ※ 다만, 2) 서류의 수출관리 부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)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
  - 가) [72번]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
  - 나) [78번]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(단, 중계무역 수출 제외)
  - 다) [79번] 중계무역수출
  - 라) [93번]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
- 4) 이 지침 1. 마.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품의 국내 양·수도 사실과 거래 수량(중량)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5) 이 지침 1. 사.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CEP 원산지국가 입증서류\*
  - \* 최초 수출국의 수출자·생산자가 작성한 해당 물품의 자재명세서 (BOM), 제조공정도, 원료구입명세서, 원가산출계산서 등

- 나.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 및 「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증명서발급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지침」(관세청, '21.6.29.)에 따른 자동심사를 적용하지 않음
- 다. 발급기관장은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물품의 RCEP 제3.19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하되,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과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된 물품의 동일성\*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
  - \* 품명, 규격, 수량, 중량, HS 품목번호 등
- 라. 그 밖에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, 소급발급, 보정, 현지확인,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제반 절차는 시행규칙 제1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따름

## 3. [자율증명] 연결 원산지신고서 작성

- 가. RCEP 연결 원산지신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음
  - 1)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
  - 2)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. 다만, RCEP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(HS6단위 기준)으로 한정
- 나.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지침 2. 가.에 규정한 증빙서류에 기초 하여 연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
- 다.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에 절차는 규칙 제14조에 따름

# Ⅳ. 한-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

### 1. 유의사항

가. 한-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

#### < 한-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>

- ① (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)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
-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
- 나.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양·수도 되거나, 추가 가공 또는 사용· 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
- 다.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, 한-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4조, 제15조 및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
- 라. Ⅲ. 1. 나. 또는 다.의 유의사항은 한-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도 준용함

#### 2.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

- 가. 신청인은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Ⅲ. 2. 가. 1)부터 3)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나. 발급기관장은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대상물품을 수입하였는지 여부,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과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된 물품의 동일성\*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\* 품명, 규격, 수량, 중량, HS 품목번호 등
- 다. 그 밖에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절차는 Ⅲ. 2. 라.를 준용

## Ⅴ. 시행일자

□ 이 지침은 '22.00.00.부터 작성・발급 신청되는 연결 원산지증명에 대해 적용함. 다만,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시행규칙 제10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함